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라 함은 강원도의 본청, 도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 등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건립”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3. “후보지”라 함은 기존의 도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강원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제안 받은 지역을 말한다.
4. “평가대상지”라 함은 후보지 중 도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5. “예정지”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신청사 건립계획의 수립) ①제5조에 따른 강원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하“신청사 건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및 강원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
2. 건립대상기관 및 건립규모
3. 건립방법 및 시기
4. 건립에 필요한 비용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의 용역) 강원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의 선정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연구단·도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의 신청기준, 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 예정지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7조(구성) ①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한다.

③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도의회 의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7명, 도의회 의장이 7명을 추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①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도지사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①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간사는 신청사건립과장이 된다.

제14조(전문연구단)①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

- ②전문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도민참여단의 설치)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수

럼과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민참여단을 둔다.

제16조(구성)①도민참여단은 도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150명 내외로 지역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도민참여단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도민참여단의 구성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평가대상지 평가)①도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도민참여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장은 평가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 공개)①도민참여단의 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즉시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평가결과 최고득점 지역을 예정지로 확정한다.

제20조(부동산의 투기 방지)공론화위원회는 후보지 선정 전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①공론화위원회의 위원·전문연구단의 위원·도민 참여단의 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등 필요한 조치
2. 민간인의 경우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을 요구

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

제24조(예산확보 및 지원)도지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따른 용역비·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공론화위원회, 전문연구단, 도민참여단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공론화위원회·전문연구단·도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